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법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- 수 신 수신처참조
- 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- 제 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
 - 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56호(2014.4.18.)
- 2.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한약제제 급여목 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38호,2014.3.6.)」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 어 안내합니다.

○ 주요 내용

- [별표1]에 규정된 2.혼합엑스산제 중 '경방갈근해기탕(혼합단미엑스산)' 등 9품목(별지1) 신설(별표1 개정)
- 시행일 : 2014년 4월 24일 부터
- 붙 임 : 1.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
 - 2.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별지
- 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이지숙 차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: 보험 제 2014-194 (2014.04.18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 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jisooklee@kha.or.kr